

지방 邑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日記類 분석 기초 연구

여상진*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An Elementary Analysis of Local Governors' Diaries for th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Official Facilities of Local cities in Joseon Dynasty

Sang-Jin Yeo^{1*}

¹Division of Architecture, Sun Moon University

요 약 그동안 지방 읍치시설의 분석과 복원 및 활용 논의에는 자료의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본고는 특히 지방 읍치시설이 복원된 뒤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갖는 바람직한 활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를 수집·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총 56종의 일기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시기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개관하였다. 또한 일기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조선시대 지방 읍치시설의 활용 양상을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지방관 작성 일기류 활용의 장점과 그에 내재된 한계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lacks of reference have been a major difficulty of the studies on official facilities of local cities in Joseon Dynasty especially for th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those. In this regard the diaries which were wrote by local governors can be good data. Total 56 kinds of diaries was collected through the result of careful study and research. Such diaries were classified by their characters and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practical use aspects of official facilities of local cities. Lastly the advantages and inherent limits of investigation of diaries were described.

Key Words : Governing institution, Local governor, Local official's diaries, Ritual ceremon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조선시대 지방 읍치시설에 관한 연구는 현존 유구를 대상으로 평면이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초기 단계의 일반적 연구 이외에 여러 읍을 대상으로 관영시설의 규모와 배치 규범을 살핀 연구와 — 읍을 대상으로 읍치의 구조를 살피고 읍치 내 주요 관영 시설의 위치를 比定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분석되는 자료는 邑誌·地理誌와 각종

회화류 및 지도 그리고 근대 이후에 작성된 사진·도면 등에 국한되는데, 이와 같은 분석에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방 읍치시설에 대한 현존 자료의 부족이다. 현존 읍지·지리지의 18C중반 이후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으로 유관 부분의 내용이 소략한 경우가 많고, 다행히 해당 읍치에 각종 회화류 및 지도가 현존한다 할 지라도 이 역시 대단히 간략하게 표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방 읍치시설에 대한 보존·복원 논의와 함께 특히 그의 바람직한 활용이란 측면까지 고려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1-D00502)

*교신저자 : 여상진(sjyeo@sunmoon.ac.kr)

접수일 10년 06월 17일

수정일 10년 07월 05일

게재확정일 10년 07월 06일

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부족이 더욱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수원 화성에서 거행되는 화성문화제의 경우 의궤를 비롯한 풍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바탕이 되어 그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음은 양지의 사실이다. 이와 대비해 볼 때 현재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행하는 지역축제에서 조선시대 지방 읍치시설이 활용되는 경우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료에 대한 발굴과 분석이 선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흡하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1.2 연구의 목적·대상 및 내용

본고는 최근 증가하는 조선시대 지방 읍치의 관영시설 복원·정비 및 이와 아울러 대두되는 복원 후 활용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日記類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기류는 최근 미시사 및 생활사적인 관심과 함께 사료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일기류 중에는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상당수의 일기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眉巖日記』 등 몇몇의 일기류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마저 간과되고 있다.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는 사료의 성격상 건축학계는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주요한 관심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차적으로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를 발굴·정리하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토대로 지방관 작성 일기류를 개관·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대상은 監營, 官衙 등 지방 읍치시설의 유관 사료 확보에 주안점을 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찰사 및 수령 등이 작성한 일기류에 1차 한정하였으며, 암행어사의 암행기록이나 무관, 찰방 등이 작성한 일기류 그리고 구휼, 토벌, 사행, 전란 등의 특수한 내용만을 담은 일기 등은 본고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 다음으로는 이들 일기류의 분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지방 읍치시설의 활용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다룬 일기류는 대단히 방대하므로 주제별 혹은 지역별 세부 내용은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4,5], 일기에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읍치시설 분석 및 활용의 기초자료로서 지방관 작성 일기류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아울러 일기류 자체가 갖는 한계와 유의점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조선시대 지방관 작성 일기류의 종류와 성격 및 개관

일기는 개인의 생활체험은 물론이고 관청 및 공동체의 업무 혹은 특정 사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날짜별로 기록해 놓은 자료를 말한다.[14] 시간순서에 따른 경험적 기록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통상의 생활일기에서 확대하여 일지에 가까운 성격의 자료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12] 따라서 日記 이외에 日誌·日錄·日曆 등은 물론 記, 記事, 行錄, 錄 등 다양한 제목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들 일기는 통상 작성 주체와 기록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황위주는 작성 주체에 따라 개인, 중앙관청, 지방관청, 단체·문중 등으로 구분하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관청의 일기와 일지, 공동체 일기와 일지, 개인의 생활일기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개인의 생활일기에는 개인의 官歷을 다룬 仕宦日記, 使行日記, 기행록, 避亂·從軍·昌義일기, 정치적 사건 견문일기, 유배일기, 강학·독서일기, 考終·問喪일기 등으로 더 세분해 볼 수 있다.[12,14]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는 작성 주체로 구분하면 개인과 지방관청 작성으로 양분되고, 내용으로 보면 지방 관청의 일기와 일지, 개인의 생활 일기 중 사환일기 등에 주로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작성 주체로 볼 때 승정원, 시강원, 예조 등 그 주체가 官署인 점이 분명한 중앙관청의 일기에 비하여 지방관청이 작성한 일기의 경우는 그 성격이 불분명하여 소속 관원 개인이 작성한 사환일기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이 많다. 작성주체가 관청이 아니라 관찰사나 수령 개개인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관청과 관련된 일기는 비록 그 내용이 업무일지와 같다 하더라도 그 분류 및 성격상 개인의 생활일기 중 사환일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기의 서술태도에 주목해 보면 동일한 사환일기로 분류된 경우라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일정 관직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일지적 성격의 일기가 있는가하면 개인이 일상생활을 적은 생활일기의 일부에 관직생활 내용이 적힌 경우도 있다. 전자는 개인적인 감정과 내용을 배제하고 각 관청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기이지만, 후자는 私的이고 身邊雜記의인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경우도 있고 전자에 비해 내용이 상세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고는 지방관 작성 일기류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일기 서술태도를 고려하여 황위주의 분류를 크게 참조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먼저 작성 주체를 기준으로 ‘官廳日記와 日誌’, ‘개인 生活日記’로 크게 구분한다. 이 중 개인이 작성한 개인 생활일기는 그 내용을 세분하여 생활일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되 해당 지방관직 내용이 담긴 ‘종합 生活日記’와 업무일지적 성격이 강한 ‘仕宦日記’로 더 세분하였다. ‘유배일기’, ‘使行日記’ 등도

개인의 생활일기가 세분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한편 사환일기를 좀 더 세분하면 하나의 관직만 따로 기록된 ‘개별 사환일기’와 개인의 여러 관직이 모두 기록된 ‘종합 사환일기’로 상분해 볼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일기별로 그 성격을 구분하여 3장의 목록에 제시하였다.

조사된 일기를 기준으로 그 수를 시기적으로 개관하면 다음 표와 같은데, 16C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여 18C에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존 일기류 전체를 개관한 기존 연구[14]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18C로 접어들면서 개인사의 기록에 대한 욕구가 한층 강해진 점이 반영된 것이다.

[표 1] 조선시대 지방관 작성 일기류의 시기별 개관

시기	15C	16C	17C	18C	19C	계
종수	1	7	8	18	22	56종

[표 2] 조선시대 지방관 작성 일기류 개관

		15C	16C	17C	18C	19C	계	
官廳日記·日誌		1		1			2	
개인 생활 일기	종합 生活日記	監司		1	1		2	
		都事			1	1	2	
		守令		3(2)	2	4(2)	1	10(7)
	仕宦日記	監司				3(2)		3(2)
		都事						
		守令		1		12(3)	4(2)	17(6)
	개별 仕宦日記	監司			1	10	6	17
		都事		3	2			5
		守令			1*		13	14
		判官			1			1
총 계		1	8(7)	9	31(18)	24(22)	73(56)	

* 『南遷錄』은 중앙관직에서 제주 정의현감으로 좌천된 유배일기이나 현감의 역임 기록이므로 편의상 개별사환일기에 포함함.

** ‘종합생활일기’와 ‘종합사환일기’의 내용은 각각 구별하여 중복 합산하되 일기의 종수는 괄호() 안에 명기함.

다음으로 이를 내용별로 세분해 본 것이 표 2이다. ‘종합 사환일기’ 혹은 ‘종합 생활일기’의 경우 재임한 지방관의 종류가 한 종의 일기 내에 다수 존재하므로 분석을 위해 그 각각을 중복 합산하여 표기하고 실제 일기의 종수는 괄호 안에 표기한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종합생활일기’와 ‘종합사환일기’는 18C에 각각 2종, 3종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고 ‘개별사환일기’의 경우 18C에는 監司가 작성한 일기가 19C에는 지방 守令이 작성한 일기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현존 일기류의 존재 여부는 다소 우연적인 결과에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감사의 일기는 고르게 분포

하고 있고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의 기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監司職을 수행한 기간을 별도의 책으로 기록한 ‘개별사환일기’가 대체로 상세하므로 이를 별도로 살펴보면 충청도 3종, 경상도 3종, 전라도 3종, 황해도 4종, 함경도 2종, 평안도 1종 등이 존재한다. 수령이 남긴 일기는 강원, 황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

[표 3] 조선시대 지방관 작성 일기류의 지역별 분포

	京畿	忠清	慶尙	全羅	江原	黃海	平安	咸鏡
監司		3	5	4	2	4	2	2
都事	1	1	2	1	1			1
守令	7	10	7	7	2	3	6	1
기타				1				1
소계	8	14	14	13	5	7	8	5

* ‘종합생활일기’와 ‘종합사환일기’는 각각 구별하여 중복 합산함.

3. 조선시대 지방관 작성 일기류의 시기별 목록 및 세부 내용

3.1 개요

일기류의 발굴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목록[6, 11, 12, 13]과 개별 일기의 연구논문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 정보 및 각종 해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특히 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과정 중에 발표된 황위주의 목록[13]은 일부 일기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황위주의 목록은 1,600여종의 일기를 조사 종합하는 성과를 올린 하였지만 본고와 같이 특정 부분에 주목한다면 모든 목록이 그러하듯 지방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일기 등 여전히 누락된 일기가 상당수 있어 본고에서 보완하였다. 한편 해제 작업이 되어있지 않거나 해제에 오류가 있어 발굴에 난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는 개별사환일기와는 달리 그 양이 방대한 종합사환일기 및 특히 종합생활일기의 경우는 본고에서 제시한 목록에도 상당수 누락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李厚(1694~1761)가 15년간의 관직생활을 작성한 『戊辰錄』에는 京畿監司와 平安監司의 기간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물을 확인치 못하여 일단 제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먼저 밝힌다.

지방읍치시설의 분석 및 활용에 일기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저자와 부임 지역 그리고 일기 내에 기록된 해당 시기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해당 일기의 해제 작업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소

략하여 참조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자 미상인 일기를 포함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읍지, 先生案 등을 참조하여 일기를 작성한 지방관을 밝히고 재임기간 중 일기에 수록된 기간을 정리하여 시기별·지역별로 참조가 용이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2 15~16세기의 일기류

주지하는 바와 같이 16C 이전에 작성된 일기는 지방관이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현존하는 것이 몇 종 되지 않는다.

[표 4] 15-16C 지방관의 일기류 목록

日記名	저자	관련 시기 및 내용		日記性格
		日記 內 관련 시기	내 용	
『錦城日記』	-	1358(공민왕7) - 1481(성종12)	羅州	官廳日記
『在嶺南日記』	黃士祐	1518(중종13). 11 - 1520(중종15). 2	慶尙道 都事	개별仕宦
『眉巖日記草』	柳希春	1571(선조4). 3 - 10	全羅監司	종합生活
『先祖 江華先生日記』	全舜弼	1574(선조7). 3 - 1577(선조10). 4	江華府使	종합生活
『草間日記』 (『先祖日錄』)	權文海	1580(선조13). 11 - 1581(선조14). 12 - 1587(선조17). 7 - 1590(선조23). 4	公州牧使 大邱府使	종합生活
『秋淵先生日記』	禹性傳	1584(선조17). 6 - 8	延安府使	종합仕宦
『關東錄』	金蓋國	1596(선조29). 2 - 1597(선조30). 2	江原道 都事	개별仕宦
『湖西錄』		1598(선조31). 6 - 1599(선조32). 2	忠淸道 都事	개별仕宦

* 日記의 전체 기간 중 수록된 재임 기간만을 명기함. 단, 일기 수록 유무 및 缺落 등으로 실제 재임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 위 주기 내용은 이하 모든 일기 목록에도 해당됨.

가장 이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錦城日記』는 日記라기 보다는 先生安에 가까워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활용이 어렵다. 『在嶺南日記』는 黃士祐(1486~1536)가 慶尙道 都事로 재직할 내용은 물론이고 다소 불충분하지만 동 기간동안 慶尙監司의 활동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先祖 江華先生日記』는 저자인 全舜弼의 후손이 후대에 행서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부사 재임시의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일기의 시작은 강화부사로 수점되기 2개월 전부터 시작되며 끝나는 시점에도 강화부사로 재임 중이었다. 아마도 보다 많은 기록 중 일부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眉巖日記草』와 같이 종합생활일기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소략하여 『眉巖日記草』에 비하면 사료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현재 남아있는 임란 이전의 일기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한다면 좋은 참고가 된다. 역시 종합생활일기인 『草間日記』에서는 權文海(1534~1591)의 公州牧使 재임기간과 大邱府使 재임기간을 살필 수 있다. 다만 결락으로 인해 전체의 기간을 모두 살필 수 없는 단점을 지니며 특히 壬亂以前 守守의 부임과정을 결락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秋淵先生日記』는 15개월 정도 기록된 전체 중 마지막 부분인 연안부사 재임기가 참고된다. 『關東錄』과 『湖西錄』은 저자의 문집인 『晚翠逸稿』에 실려있다. 시기적으로는 이르나 정유재란 직전과 난이 끝나가는 특수한 시점에 해당하며 대단히 간략하여 좋은 참고가 되지는 못한다.

3.3 17세기의 일기류

16C에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일기류는 17C에 이르러 보다 확대된다.

[표 5] 17C 지방관의 일기류 목록

日記名	저자	관련 시기 및 내용		日記性格
		日記 內 관련 시기	내 용	
『愚谷日記』	李惟侃	1609(광해1). 1 - 9	開城都事	종합生活
		1609(광해1). 12 - 1613(광해5). 3	天安郡守	
『巡部日記』	裴大維	1609(광해1). 10 - 1610(광해2). 5	慶尙道 都事	개별仕宦
『咸鏡道兼春秋日記』	鄭弘任	1630(인조8). 6 - 11	北靑判官	개별仕宦
『泰安郡日記成冊』	미 상	1635(인조13). 4 - 6	泰安郡守	官廳日記
『萬頃日記』	金 灝	1641(인조19). 6 - 1643(인조21). 2	萬頃縣令	종합生活
『嶺南日記』	林士覃	1642(인조20). 10 - 1643(인조21). 9	慶尙監司	개별仕宦
『南邊錄』	金聲久	1679(숙종5). 7 - 10	旌義縣監	유배일기
『北征記』	權大臨	1691(숙종17). 7 - 11	咸鏡道 都事	개별仕宦

李惟侃(1550~1634)의 『愚谷日記』에 기록된 천안군수의 기간은 비록 1612년의 일기가 결락되기는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을 살필 수 있으므로 수령의 일기로 주목받아 최근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7,8,9] 『巡部日記』는 裴大維(1563~1632)의 慶尙道都事 재임기를 기록한 개별사환일기이다. 비교적 소략하지만 『愚谷日記』에 나타난 開城都事의 기록과 함께 시기가 앞선 편에 속한다. 金灝(1593~1653)의 『萬頃日記』는 한 제목 내에 세 가지 일기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이다. 만경현령 임명소식

을 들은 날부터의 기록이 『만경일기』이며 일기의 시작이므로 전체의 제목이 되었다. 『南遷錄』은 중앙관직에 있던 저자 金聲久가 旌義縣監으로 좌천된 유배일기에 해당한다. 한편 『泰安郡日記成冊』은 월별 한개씩의 기사 총 3개의 아주 짧은 기사만 쓰여진 대단히 소략한 일기로 전혀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4 18세기의 일기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8C에 이르면 일기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내용 및 형식상으로도 보다 다양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표 6] 18C 지방관의 일기류 목록

日記名	저자	관련 시기 및 내용		日記性格
		日記內 관련 시기	내용	
『忠淸監營日記』 (『湖西監營日記』)	李濟	1704(숙종30). 6 - 1705(숙종31). 2	忠淸監司	개별仕宦
		1709(숙종35). 9 - 1710(숙종36). 7	黃海監司	
『海西日記』	李濟	1710(숙종36). 12 - 1712(숙종38). 11	平安監司	개별仕宦
		1727(영조3). 8	萬頃縣令	
『關西日記』	權相一	1736(영조12). 1 - 1738(영조14). 12	蔚山府使	종합生活
		1721(경종1). 4 - 7	忠淸監司	
『清臺日記』	權相一	1727(영조5). 10 - 1730(영조6). 9	咸鏡監司	개별仕宦
『湖西監營日記』	尹陽來	1730(영조6) - 1731(영조7)	咸鏡監司	
『關北日記』		尹陽來	1730(영조6). 7 - 1731(영조7). 5	務安縣監
『巡曆日錄』	1736(영조12). 3 - 7		木川縣監	
『市隱日錄』	金相奭	1738(영조14). 7 - 1739(영조15). 3	高山察訪	종합仕宦
		1739(영조15). 8 - 11	高山察訪	
『湖南日記』	李錫杓	1740(영조16). 4 - 1741(영조17). 11	義州府尹	개별仕宦
		1744(영조20). 7 - 1746(영조22). 8	淮陽府使	
『嶺營日記』	趙載浩	1747(영조23). 9 - 1749(영조25). 6	豐基郡守	개별仕宦
		1751(영조27). 6 - 1752(영조28). 7	慶尙監司	
『蓬壺日記』	趙鎭宅	1757(영조33). 5 - 1759(영조35). 5	江華留守	종합生活
		1750(영조26). 5 - 1751(영조27). 1	全羅監司	
『嶺營日記』	趙載浩	1756(영조32). 2 - 1759(영조35)	(泰仁縣監)子	종합生活
		1751(영조27). 6 - 1752(영조28). 7	慶尙監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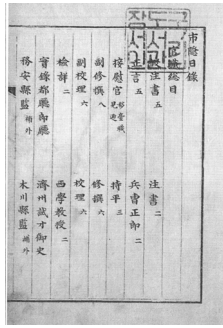
『松崖隨錄』	李彥衡	1759(영조35) - 1793(정조17). 4 - 1795(정조19). 4	(永柔縣監)子 慶尙監司	종합仕宦
		1759(영조35). 9 - 1763(영조39). 10 - 1764(영조40). 2	谷山府使 楊州牧使	
		1765(영조41). 1 - 1768(영조44). 2 - 12	成川府使 江原監司	
		1780(정조4). 4 - 10	忠淸監司	
		1779(정조3). 8 - 1780(정조4). 6 - 1786(정조10). 6 - 1787(정조11). 4	木川縣監 全義縣監	
『錦營日記』	沈頤之	1780(정조4). 4 - 10	忠淸監司	개별仕宦
『輿齋亂藁』	黃胤錫	1779(정조3). 8 - 1780(정조4). 6 - 1786(정조10). 6 - 1787(정조11). 4	木川縣監 全義縣監	종합生活
		1780(정조11). 8 - 12	全羅道都事	
『卑牧齋日記』	李煒	1780(정조11). 8 - 12	全羅道都事	종합生活
『海營日記』	徐邁修	1795(정조19). 3 - 1796(정조20). 12	黃海監司	개별仕宦
		1783(정조7). 6 - 1784(정조8). 2 - 1785(정조9). 4 - 1786(정조10). 9	安岳郡守 成川府使	
『海石日錄』	金載瓚	1787(정조11). 1 - 8	原春監司	종합仕宦
		1795(정조19). 12 - 1797(정조21). 3 - 1797(정조21). 9 - 10	平安監司 安山郡守	

먼저 주목되는 것은 黃胤錫(1729~1791)이 약 57년간 거의 평생에 걸쳐 작성한 『輿齋亂藁』와 같은 대단히 방대한 종합생활일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眉巖日記』처럼 방대한 분량의 일기도 16C부터 존재하였지만 權相一(1679~1760)이 약 58년 동안 기록한 『清臺日記』, 趙鎭宅(1746~?)이 약 30년 동안 기록한 『蓬壺日記』와 같이 18C에 이르면 더욱 다양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清臺日記』는 결락이 심하여 만경현령의 기간은 거의 분석되기 어려우나, 『蓬壺日記』는 저자가 慶尙監司로 재직한 기간은 물론 그의 부친 趙晟이 泰仁縣監과 永柔縣監을 역임할 당시 동행한 기록까지 남아있다. 『輿齋亂藁』는 木川縣監과 全義縣監의 기간이 참조되는데 그 내용도 상세하여 수령 업무 관련 여러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2,7,9]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몇십년간의 사환이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이른바 종합사환일기이다. 金相奭(1690~1765)이 약 22년간의 환력을 기록한 『市隱日錄』, 李彥衡(1710~?)이 약 15년간을 기록한 『松崖隨錄』, 金載瓚(1746~1827)이 약 54년간을 기록한 『海石日錄』 등이 해당되며 이들 일기의 서두에는 관직의 총목이 실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사환에 해당하는 부분

은 소략하여 참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개인이 개별적인 사환 일기를 다수 남긴 경우도 주목된다. 위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李濟(1654~1714), 尹陽來(1673~1751) 등으로 해당 일기는 모두 監營日記로서 그 내용이 풍부하다.[4]



[그림 1] 『市隱日錄』의 관직 총목

3.5 19세기의 일기류

19C 초반에는 18C와 같이 監司의 일기가 많으며 특히 李相瓚(1763~1841)은 監營日記를 2건이나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19C 중반부터는 수령이 각 임지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한 개별사환일기가 이전시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여 1900년대 초까지 이어진다.

[표 7] 19C 지방관의 일기류 목록

日記名	저자	관련 시기 및 내용		日記性格
		日記內 관련 시기	내용	
『海營日記』	李相瓚	1804(순조4). 10	黃海監司	개별仕宦
		1805(순조5). 6		
『湖南日記』		1810(순조10). 7	全羅監司	개별仕宦
		1812(순조12). 3		
『成都日錄』	申 絢	1808(순조9). 11	成川府使	종합生活
		1809(순조10). 11		
『海營日記』	李翊會	1828(순조28). 12	黃海監司	개별仕宦
		1830(순조30). 12		
『完營日錄』	徐有集	1833(순조33). 4	全羅監司	개별仕宦
		1834(순조34). 12		
『華營日錄』		1836(현종2). 1	水原留守	개별仕宦
		1837(현종3). 12		
『英府日記』	金 鉞	1858(철종9). 12	東英府使	개별仕宦
		1859(철종10). 8		
『大興日錄』	崔鶴昇	1869(고종6). 1 - 3	大興郡守	개별仕宦
『日記』	金膺集	1863(철종14). 7	海美縣監	개별仕宦
		1867(고종4). 2		
『丙戌日記』	金明圭	1886(고종23). 1	驪州牧使	개별仕宦
		10		
		1886(고종23).10 - 12		
『旌善郡日錄』 (『旌善叢瑣錄』)		1887(고종24). 3	旌善郡守	개별仕宦
		1888(고종25). 8		
『慈仁縣日錄』 (『慈仁叢瑣錄』)		1888(고종25). 8	慈仁縣監	개별仕宦
		1889(고종26). 7		
『咸安叢瑣錄』	吳弘默	1890(고종27). 1 - 2	咸安郡守	개별仕宦
		1893(고종30). 2		
『固城叢瑣錄』		1894(고종31). 11	固城守令	개별仕宦

『智島郡叢瑣錄』		1895(고종32). 2 - 1897(광무1). 5	智島郡守	개별仕宦
『嶠藩集略』	李현永	1890(고종27). 12 - 1893(고종30). 3	慶尙監司	개별仕宦
		1902(광무6). 6 - 1903(광무7). 7	慶尙北道觀察使	개별仕宦
『日誌』	李鍾弼	1894(고종31). 9 - 1895(고종32). 11	龍岡郡守	개별仕宦
『乙未日記』	李南珪	1895(고종32). 1 - 4	永興府使	개별仕宦
『金馬日記』	鄭圭嫻	1896(고종33). 2 - 1897(광무1). 4	益山郡守	개별仕宦
『踐歷』	白命基	1896(건양1). 11 - 1898(광무2)	豐德郡守	개별仕宦
『日記』	李夏燮	1897(광무1). 11 - 1899(광무3). 3	懷仁郡守	종합仕宦
		1899(광무3). 3 - 1900(광무4). 11	茂朱郡守	
		1900(광무4). 11 - 1904(광무8). 8	瑞山郡守	

李相瓚 이외에 이 시기 주목되는 인물은 徐有集(1764~1845), 吳弘默(1834~1906), 이현영(1837~1907) 등으로 모두 각 임지마다 상당한 분량의 개별사환일기를 작성하였다. 특히 오형묵은 5건의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19C 일기의 증가는 이들에 힘입은 바 크다.

4. 지방관 작성 일기류에 나타난 읍치시설의 이용

4.1 개요

지방 읍치시설은 監營處와 일반 邑治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기의 巡歷行政體制에서 17C 후반에 이르면 留營行政體制로 전환되면서 각 道 監營施設이 확충되었을 것이므로 이 역시 구분이 필요하지만 유영행정시기의 현존 監司日記가 한정적이므로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고찰하도록 한다. 한편 觀察使가 감영처로 이동하기 전에 제수된 道에 到界하고 交龜할 때에는 중요한 行禮가 행해진다. 이들은 監營處가 아닌 각 道の 경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서술 순서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감영처와 감영시설 이용을 살펴보는 4.2절 부분에 포함하였다.

1.2절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다룬 일기류는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므로 지방관이 읍치시설을 이용하는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기류의 활용이란 측면에 주목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4.2 감영처와 감영시설의 이용

4.2.1 도계 및 교귀

到界, 交龜 및 신임 觀察使가 감영처에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나와 격식에 맞춘 行禮와 儀式이 행해졌다. 이때 이용된 읍치시설과 실제 행해진 行禮의 모습을 일기류를 통해 생생한 사례로 검토할 수 있다.

‘卯時에 밥을 먹고 출발하여 礪山의 경계에 이르니 全羅道人이 큰 旗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辰時初에 礪山에 들어가니 各官과 各浦吏가 空狀(處分을 청하는 書狀)을 들고 五里亭까지 나와 앞드린 자가 70여인이다. …… 教諭書를 모시고 들어가 後大廳의 東壁에 이르러 郡守 鄭淹 등의 절을 뜰에서 받고 問上禮를 행한 뒤에 直軒房으로 들어갔다. 곧 옷을 고쳐입고 나와 北壁의 椅子에 걸터앉아 守令 察訪 審藥 檢律의 公禮 再拜를 받고나니 戶長 記官 醫律生 日守 書員이 차례로 뜰에서 行禮를 하고 校生은 階上에서 行禮를 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私禮의 揖을 행했는데 나는 戶長 이하의 私禮는 除廢시켰다.’

柳希春, 『眉巖日記草』, 1571년(선조4) 3월 21일

‘아침 식사 전에 安保驛을 출발하여 식사 후에 鳥嶺關 西門에 밖에 이르니 鳥嶺關別將 조세대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祇迎하였다. 門樓에 올라 잠시 휴식한 뒤에 쌍가마를 타고 交龜亭에 이르니 舊觀察使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官印과 兵符를 절차에 따라 전하고 받은 뒤에 내려왔다.’

문경현감 홍력, 유곡찰방 임형원, 지례현감 이복상, 조령별장 조세대가 五里亭에서 守書, 論書를 祇迎하여 龍亭에 올리고 그대로 前導하여 客舍에 이르렀다. 迎命은 裨將으로 대신 받게 하고 公私禮를 면제하니 함께 入謁하고 지례현감은 바로 인사하고 떠났다. 東軒에 앉아 到界進上物을 監封하고 公事所志를 결재하였다.’

趙載浩, 『嶺營日記』, 1751년(영조27) 6월 15일

위 두 기사는 도계 및 교귀가 매우 상세한 사례에 해당한다. 도계 및 교귀는 서울과 통하는 주요 대로와 맞닿은 읍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道の 경계지점까지 관원들이 마중나와 행례하게 되고 이후 도계한 읍의 치소로 향하게 된다. 도계한 경계부의 시설, 도계한 읍의 치소로 향하는 곳에 위치한 五里亭, 그리고 치소의 客舍가 행례를 위한 주요한 시설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관찰사가 한양에서 辭朝 후 도계하는 것은 아니다. 觀察使 제수 당시 下三道의 지방관으로 근무 중 이라면 사조를 생략하고 도계하게 되므로 이때 도계하는 읍치는 달라질 수 있다. 『錦營日記』의 沈頤之는 경상도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경상도와 인접한 충청도 黃澗으로 도계한 특수한 상황도 일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신구감사의 교귀의 장소와 교귀시에 어떠한 시설이 이용되었는지도 일기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일례로 도계한 곳이 아닌 監營處 公州에서 交龜하기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李濟는 공주 내 금강 상류, 沈頤之는

拱北樓를 교귀소로 이용하였다.

4.2.2 감영처의 行禮

순령행정시기의 관찰사는 도계 후 감영처를 향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유명행정체제에서는 도계지로부터 곧바로 監營處로 향하게 되며 이때 감영처에서의 行禮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巳時에 떠나서 午時에 威興 遠亭에 도착하니 判官이 맞이하였고 兼中軍 조호신이 大旗幟를 거느리고 나와 역시 出待하였다. (함흥) 客舍에 前到하여 判官과 赴戰別將 박성식이 教諭書에 肅拜하고 問上禮 公私禮를 행하고 中軍 諸將校가 역시 軍禮를 행한 후 宣化堂에 移坐하였다. 中軍 判官이 入謁하고 물러가고, 所志 公事を 결재하였다. 저녁에 澄清軒에 옮겨 들어 잠자리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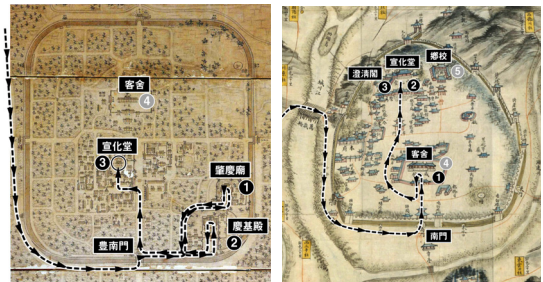
尹陽來, 『關北日記』, 1727년(영조5) 12월 6일

‘오후에 (삼례역을) 출발하여 全州 五里程에 이르니 中軍 황재원, 中營將 이유목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大旗幟를 거느리고 나와 맞이하였다. (전주) 南門 밖에 이르러 肩輿를 타고 바로 肇慶廟 改服所에 가서 公服을 갖추어 입고 廟庭에 가서 肅拜하고 奉審한 後 바로 慶基殿에 가서 肅拜하고 奉審한 뒤 宣化堂에 들었다. 中軍, 中營將과 列邑 守令이 延命하였는데 兵房裨將에게 대신 받게 한 후에 제 수령이 차례로 入見하였다.’

徐有集, 『完營日錄』 1833년(순조33) 4월 16일

일기를 통해 도계 후 감영처에서 행한 일련의 행례도 검토할 수 있다. 서유구는 도계 다음 다음날(4월 18일) 아침 客舍에 가서 望闕禮를 행하였고, 禮를 마친 후 鄉校에 가서 謁聖하고 啓聖祠를 奉審하였다. 윤양래는 이튿날(12월 7일) 새벽에 客舍에 가서 殿牌에 行禮한 후 이어서 鄉校에 謁聖하였으며 이후 그는 근교의 陵殿 등을 奉審하는 일을 며칠 동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영시설 및 제례시설과 연관된 각종 행례의 수순과 절차는 현존 유구는 물론 아래 그림과 같은 상세한 지도 자료 등 유관 사료와 결합된다면 풍부한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관찰사의 감영처 도입시 行禮 동선 좌 : 全羅監司 徐有集 全州府 (19C초 『完營日錄』) 우 : 咸鏡監司 尹陽來 咸興府 (18C초 『關北日記』)

한편 일기마다 기술된 내용의 상세함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연관을 갖는 관찰사의 일기와 수령의 일기가 존재한다면 교차 분석이 가능하다. 일례로 충청감사 沈頤之는 도계처가 아닌 감영처 공주에서 交龜까지 행하였으나 『錦營日記』의 기사는 소략하다. 공교롭게도 당시 상황이 목천현감 黃胤錫의 『頤齋亂藁』에서 상세하다.

‘朝飯 후 아직 어두울 때 의관을 갖추고 將臺 坪江 위의 依幕으로 나아갔다. 營將, 中軍, 判官이 차례로 와서 모였고 巳時에 新監司(심이지)가 도착하였다. 三官과 함께 동시에 望揖하고 先導하여 熊州館(客舍)에서 延命을 하였다. 午後에 新監司와 舊監司가 山城(拱北樓)에서 交龜를 한 뒤 監營에 이르렀다. 이에 裨將으로 대신하여 教諭書를 보내니 나(황윤석)와 三官은 또 동시에 殿牌에 四拜하고 上香하고 또 四拜하였다. 延命을 끝내고 監營으로 가서 公禮와 私禮로 아뢰었다.’

黃胤錫, 『頤齋亂藁』, 1780년(정조4) 4월 15일자

즉 관찰사 도착 후 客舍로 가서 教諭書에 肅拜하는 行禮를 먼저 하였고, 交龜는 그 후에 拱北樓에서 행하였으며 고귀 후 관찰사는 監營으로 가서 坐起하였고 迎命禮는 客舍로 裨將을 대신 보내어 행한 상세한 상황을 눈으로 보듯 살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관 작성 일기를 통하여 감영처에서 행한 각종 정기·비정기 행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國朝五禮儀』 규정만으로는 그 실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지방 관청에서의 求食禮와 이를 행한 장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4.2.3 감영처의 집무

경상감사 趙載浩의 『嶺營日記』를 분석하면 감영처 대구에서 관찰사가 집무시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觀風閣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觀風閣이 등장하는 달이 있을 정도이다. 그 외의 시설 이용 상황을 정리·분석해보면 상당히 주목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감영 시설 중 監司의 政廳인 宣化堂이 매우 드물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宣化堂은 처음 대구에 부임하여 坐起禮와 軍禮를 행한 것(1751.6.22), 宣傳官과 符節을 맞춰 본 것(11.29), 秋冬 褒貶 결과를 공고한 것(12.15), 治罪한 것(1752.3.21) 등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사의 정청인 宣化堂에서 坐起하였다는 기록이 드문 것은 李濟의 『忠淸監營日記』, 尹陽來의 『湖西監營日記』, 沈頤之의 『錦營日記』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忠淸監營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충청감영에서도 宣化堂에서의 坐起는 죄인을 親問하는 등 특별한 경우로 보이고 일상적인 집무는 오히려 披香堂이나 拱北樓가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李濟의 『關西日記』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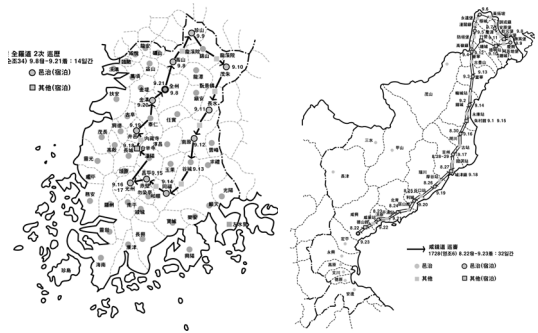
평안감영을 분석해 보면, 宣化堂, 上衙, 澄清堂, 貳衙, 館所(혹은 大同館) 등이 집무처로 등장하는데 慶尙監營 및 忠淸監營보다 宣化堂에서 행한 집무가 비교적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역시 澄清堂에서의 집무 기사가 더 많이 등장함을 볼 수 있고, 尹陽來의 『關北日記』를 통해 함경감영을 분석하여도 역시 宣化堂의 집무 기사보다 澄清堂의 집무 기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감영시설 중 政廳인 宣化堂은 褒貶, 治罪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이용되었고, 감사의 일상적 집무는 澄清堂과 같은 시설이었음을 일기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宮闕의 正殿과 便殿의 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일기류의 분석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에 해당한다.

4.3 일반 읍치의 읍치시설 이용

4.3.1 감사 순력과 일반 읍치시설의 이용

재임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監司 日記에는 순력의 기사가 등장하며 경우한 읍과 숙박한 읍 그리고 支供 내용 등도 등장하므로 일기류 분석을 통하여 관찰사의 순력과 관계되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관찰사의 순력행로를 지도에 표시해 본 사례의 일부이다.



[그림 3] 監司의 巡歷 行路 사례

좌 : 全羅監司 徐有集 (19C초 『完營日記』)

우 : 咸鏡監司 尹陽來 (18C초 『關北日記』)

관찰사의 순력은 일반 읍치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읍치 시설의 활용과 행례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해당 읍을 순력하는 관찰사는 읍치 어귀의 五里程에서 영접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行營行政體制 하의 순력은 그 규모도 크고 각 읍치에서 비교적 동일한 정도의 행례가 이루어진 반면 留營行政體制 하에서의 순력은 이미 그 규모가 작아졌으며 營將이 설치된 邑이나 水營, 行營 등지에서만

水使, 兵使, 營將, 虞侯 등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까지 觀察使를 迎接하러 나오는 비교적 큰 규모의 迎接行禮가 이루어진 것으로 각 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기사는 그 한 예이다.

‘中營將 兵虞侯가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 맞이한 뒤 兵使 역시 나와 教諭書를 기다려 望揖하고 先導하여 客舍에 드니 營將 虞侯가 迎命하다. 客舍東軒에서 坐起하고 營將 虞侯가 公私禮를 행한 뒤 兵使 營將 虞侯가 入謁하였다.’

沈頤之, 『錦營日記』 1780년(정조4) 9월 15일, 西原(淸州)

오리정 영접 후 수령이 관찰사를 맞이하는 행례는 읍치의 客舍에서 행하게 된다. 한편 위 『錦營日記』를 통해 보면 선도하는 教諭書의 望揖과 관찰사의 迎命禮는 客舍에서 행하지만, 이후 관찰사의 집무(坐起)와 公禮와 私禮는 客舍의 東翼軒에서 또는 官衙의 東軒에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각 읍의 방문객이 많은 경우 위계에 따른 집무처와 유숙의 공간 사용 내용도 일기를 통해서만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4.3.2 수령의 부임·집무와 읍치시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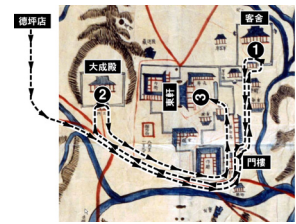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관찰사의 경우와 같이 수령의 부임에도 일정한 절차와 행례가 필요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1,2]

조선전기 公州牧使에 부임한 權文海는 얼어붙은 錦江을 깨고 任地에 이르렀는데, 마중 나온 判官 및 校官과 公私禮를 행하고 당일로 人物點考를 마친 뒤 밤늦게 衙舍에 들었다. 다음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鄉校에 나아가 謁聖한 것이었고, 그 후에 中大廳에 나아가 行公하였다. 18세기 말 충청도 木川縣監으로 부임한 黃胤錫은 木川에 당도하여 제일 먼저 殿牌에 行禮하였고 다음으로 그는 東軒에 들러 印符를 건네받았다. 또 그는 몇 해 뒤 충청도 全義縣監으로 부임하였는데, 지도를 참조하여 行禮 行路를 분석해 보면 到任 후 제일 가까운 鄉校 그리고 東軒을 지나쳐 제일 먼저 客舍에 들러 行禮한 뒤 다시 길을 되짚어 鄉校 大成殿에서 謁聖하였고 다음으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東軒에 들어 點考하였음이 파악된다. 19세기 초 수원도호부에 도임한 서유구는 먼저 華寧殿에 肅拜하고 이어서 莊南軒하여 赴任 狀啓를 封發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健陵, 顯隆園을 奉審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春孟朔의 정해진 의식에 따라 華寧殿을 크게 봉심하였으며, 이틀 뒤에는 향교에 謁聖하였다.

그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상의 일기 사례를 통해 부임과 동시에 客舍와 鄉校에서 행례를 한 뒤 업무

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읍치 내에 중요한 제례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숙배하는 것이 선행된다.

한편 일기를 통해 수령의 집무처를 확인해 보면 공식적인 집무처인 東軒은 물론이고 다양한 읍



[그림 4] 黃胤錫의 全義縣監 부임시 行路 (『願齋亂葉』)

치시설에서 집무를 하였음도 확인된다. 형사동추의 경우 客舍 동익현이 이용되며, 환곡 업무는 창고에서 행해지는 데 外倉의 경우 별감 등을 파견하였지만 內倉의 경우 수령이 직접 좌기하였다. 지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창 부근의 좌기청은 집무처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령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기에서는 水庫나 축성역 또는 건축 현장 등의 다양한 좌기처도 확인된다.[8,10]

5. 지방관 작성 일기류 분석의 활용 및 한계

지방관 작성 일기류 분석의 잇점은 무엇보다 구체성을 지닌 실제적인 읍치시설의 활용 상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國朝五禮儀』 등 제 규정과의 합치 상황을 검토할 수 있고 지방 시설인 관계로 명확하지 않게 규정된 세부 내용의 실제 준용 상황과 행례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구체성에 근거하여 일기류의 분석이 활용된다면 읍치 시설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도서 등의 부수상품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관찰사의 순력 행로는 각 지방도시의 문화축제 네트워크로 연결 가능하며 순력 행로를 따라 걷는 탐방길이 조성될 수도 있다. 각종 시각자료와 결합된다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공원으로만 이용되는 감영시설(터)와 관아(터)에 구체적 사료가 바탕이된 문화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도 될 수 있다. 각 읍치시설 복원의 중요도나 선후 관계 파악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원이 어려운 지방 읍치시설에 대하여 모형 및 3차원 가상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의례 재현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일기류의 분석은 그 자체가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특정한 개별사항이 일반화되어 이해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저자가 주관적 선택으로 기록한 내용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도 지적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일기에 기록되지 않는 일기자료의 은닉성도 문제가 된다.

그 날의 일을 저자가 취사선택하여 적은 일기의 특성상 그 내용의 분석에 상당한 난점이 있다. 각 일기마다 기록의 상세한 정도에 경중이 있어 그 상호 비교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관이 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저자로서는 당연한 일상 업무의 장소와 공식 업무의 좌기처가 표현되지 않아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분석하였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일기에는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술된 경우도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부호가 사용되기도 하고 방문한 수령과 接賓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적어 개인적인 메모의 용도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일기 자체가 대단히 소략하여 전혀 참고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별사환일기의 경우는 매일의 일지 형태로 작성되므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일기 중에는 『完營日錄』과 같이 각종 수발한 문서를 일기 내에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在嶺南日記』와 같이 동일기간에 작성된 각종 공문서가 『嶺營狀啓騰錄』 즉 騰錄類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 기간에 작성된 각종 문서와 상호 비교 검토되어야 보다 상세한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 동시에 邑誌 및 가시 자료로서 지도류의 참조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가능한 경우 실물 및 발굴 조사결과도 반드시 참조되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류라 할지라도 그의 분석에서 흔히 부딪히는 난관인 관영시설의 종류, 명칭 등의 상호 불일치는 일기류를 포함한 여러 사료의 상호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난점임은 미리 염두에 둘 필요성도 있겠다.

동일한 저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지방관을 역임하며 다수의 일기를 작성한 경우도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거니와 이들 개별사환일기의 경우 통상 습관적인 어휘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일기에 나타난 표현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경우도 있다. 저자인 監司 자신이 매일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그 휘하의 영리에게 지시해서 구술하고 작성토록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추측된다. 이 역시 종합생활일기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유념할 사항이다.

한편 타인에게 읽혀질 것을 전제로 쓰여지는 일기도 있고 일부는 개인 문집에 실려있는 경우도 있으며 목판본으로 간행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이본이 존재할 경우 가장 상세한 선본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기의 일부는 초서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본고를 위해 일부 자료는 개인적으로 탈초 작업을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선학과 각종 기관 및 문중에서 이미 행한 탈초 간행 작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탈초 작업이 필요한 일기도 많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이상으로 지방 읍치시설의 분석과 활용 논의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어온 유관 자료의 부족이란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에 주목하고 이를 발굴하여 개관·정리하였으며, 일기의 세부 내용 검토를 토대로 관찰사와 수령의 각종 직무와 행례에 각종 지방 읍치시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일기류를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투여된 시간에 비하여 소기의 성과조차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본문에서 일부 제시한 바와 같은 사례들은 기존의 지리지와 지도 자료로는 분석될 수 없는 귀중한 내용들로 지방 읍치시설 연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원된 지방 읍치시설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관찰사의 순력, 교귀, 망궐례 등이 재현 가능한 의례로 자주 거론되고 일부는 매해 축제의 일환으로 재현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고와 같은 일기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지역의 특징적인 점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면이 제한된 본고에서 대단히 방대한 지방관 작성 일기류의 모든 세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별도의 논고를 통해 상세히 분석·정리하는 것은 곧이어 진행할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고 작성 과정에서 일부 武官이 작성한 일기류도 발굴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兵營, 水營, 鎭 등의 군사시설 활용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분석하고 그 내용까지 상호 비교·검토되어 종합된다면 조선시대의 지방 관영시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층위의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모두 향후의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의 수집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오랜기간 작성한 종합생활일기 등에서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된 목록의 지속적인 보완 작업 역시 연구자의 몫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1] 김 혁, “조선후기 수령의 부임의례 -‘願齋亂葉’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 22집, 2002.
- [2] 노혜경, “조선후기 수령 행정의 실제 -황윤석의 『이제난고』를 중심으로-”, 혜안, 2006.
- [3]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론, 2005.
- [4]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施設 利用 -交龜, 巡歷 및 行禮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권 1호, 2008. 2.
- [5] 여상진, “『完營日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권 2호, 2010. 2.
- [6]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집, 한국역사연구회, 1997.
- [7] 이선희, “17~18世紀 忠淸地域 守丞의 日常業務 研究”, 중앙대학교 박론, 2004. 12.
- [8] 이선희, “『우곡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수령의 일상업무”,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9] 이선희, “조선후기 수령의 출퇴근과 근무방식”, 사학연구 92호, 2008. 12.
- [10] 전경목, “조선중기 守丞의 管外 업무 -金灝의 『萬頃日記』를 중심으로-”, 전주사학 9권, 朱明俊教授 華甲紀念論叢,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 [11]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6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12]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인문학연구 30집, 2009.
- [13]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 [14]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대동한문학 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여 상 진(Sang-Jin Ye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건축문화재, 공동주택